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1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제출자	고령군수 (군민안전과장)
제출연월일	2021. 3. .

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

#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1. 3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## 1. 제정이유

-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가입대상(안 제1조 ~ 제3조)
- 보상범위 및 보험금액 산정(안 제4조 ~ 제7조)
-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(안 제8조 ~ 제10조)

## 3. 제정안 : 붙임과 같음

## 4. 관련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5. 참고자료

- 가. 입법예고 결과 : 2021. 5. 4. ~ 5.25/ 해당사항없음
- 나. 예산관련 사항 : 해당사항없음
- 다. 성별 영향평가 결과 : 해당사항없음
- 라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사항없음
- 마. 기타 참고사항

##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령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군민안전보험”(이하“보험”이라 한다)이란 재난 및 여러 가지 사고와 관련하여 고령군민을 대상으로 고령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.
2. “보험기관”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고령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.
3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같은 조 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.

제3조(가입대상)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(출입국·외국인 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군을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)을 피보험자로 한다.

제4조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) 고령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여러 가지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보험료 납입방법) 보험료는 고령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.

제6조(보험금 청구 등) 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험금액 산정) 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보험금 지급)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험금 지급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.

1.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간 경우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
3.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군민안전과	
연 락 처	054-950-6444